

종합배상책임보험(I)

이 보험의 담보범위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조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 보험증권을 잘 읽어 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담보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증권에서 사용하는 「귀하」라 함은 신고란 기재의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라 함은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란 제2장「피보험자」에서 정해진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 보험증권에서「」내에 인용되는 용어는 제5장「용어의 정의」에 따릅니다.

제 1 장 담 보 범 위

담보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회사의 책임범위

- a.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급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신고란에 소급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일이전 또는 보험기간이후에 발생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고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담보A나 담보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접수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동일인이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어느 하나가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때에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3) 어느 하나의 사고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에 입힌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어느 하나가 피보험자에게 최초로 제기된 때에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보상합니다.
- b.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 「담보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2) 계약이 없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
- c.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1)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하도록 기여한 것
 - (2) 법령상의 음주연령에 미달한 사람 또는 주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 (3)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 규칙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제조,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d. 근로자의 재해보상,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
- e. 아래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 (2) 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입은 손해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 (2) 신체장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른사람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f. (1) 아래의 장소 또는 경우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유출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 (a)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시설내 또는 그 시설로부터
- (b) 폐기물질의 취급, 보관,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하나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 (c) 귀하나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언제라도 폐기물을 운송, 취급, 보관,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경우
- (d) 귀하나 귀하를 대신하여 직접 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아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내나 그 시설로부터
 - ①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중화작업을 하였을 때

(2)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용기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중화작업으로 발생한 손실, 기타 비용 공해물질이란 연기, 증기, 매연,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성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수리,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g.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사용 또는 타인에게 위탁한 항공기와 「자동차」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 차한 선박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사용이라 함은 운행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내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귀하가 소유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 (가) 길이가 26feet미만이고
 - (나) 운임을 받으며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것
- (3)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귀하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
- (4) 항공기, 선박의 소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 (5) 「이동장비」에 관한 제6장 용어의 정의 8. F(2) 또는 F(3)에 규정한 기계의 운행으로 인 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h.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1) 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장비」의 운송
- (2) 「이동장비」를 시험, 속도경기, 해체경기의 연습, 준비 또는 곡예운전에 사용

i. 선전포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j. 아래의 「재물손해」

- (1) 귀하가 소유, 임차 또는 점유하는 재물
 -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시설로서 「재물손해」가 그 시설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 (4) 귀하의 보관,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는 동산
 - (5) 귀하, 또는 귀하를 대신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이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 (6) 「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복구, 수리, 교환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 부분
- 그러나 그 시설이 「귀하의 작업」의 대상이며 귀하가 점유,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3),(4),(5) 및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되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되지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니합니다.

k.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귀하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l.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귀하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이나 손해를 야기한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인이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m.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보상합니다.

n. 다음의 사용불능, 회수, 철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 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 「귀하의 생산물」

(2) 「귀하의 작업」 (3) 「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C.에서 N.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제3장 보상한도액에 명기한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담보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A.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A 및 담보B에서 지 급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담보 A.나 담보 B.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 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B.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 (2) 귀하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C.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광고침해
-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아래의 사유에 의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 (2) 보험기간 개시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B. 아래의 사유로 인한 「광고침해」

-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유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제품,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잘못된 경우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4) 광고, 라디오방송, 출판물 또는 TV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생한 경우

담보C. 의료비 지급

1. 회사의 책임범위

- a. (1) 보험기간중에「담보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 (2) 사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 (3) 피해자가 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 회사는 아래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1)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2)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장소
- (3) 귀하의 사업활동에 기인된 사고
- b.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도액 내에서 아래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1)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비용
- (2)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장해」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b.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고용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게 대한 「신체장해」
- c.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을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입은 「신체상해」
- d.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자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보상되는 「신체상해」
- e. 운동경기에 참가중에 입은 「신체상해」
- f.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포함되는 「신체상해」
- g. 담보A에서 보상하지 않는 「신체상해」
- h. 선전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 전쟁이라 함은 내란, 폭동, 반란 또는 혁명을 포함합니다.

추가지급조항 - 담보A 및 담보 B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
2. 신체장해배상 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사용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보석 보증보험료를 250달러까지 보상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석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이내의 보증금액에 대한 차입해제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입해제 보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한 방어에 협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일당 \$100한도내의 소득상실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송비용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예비판결의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예비판결의 이자는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7. 판결 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대한 이자.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판결 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보상되는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합니다.

제 2 장 피 보 험 자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신고란에 개인으로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단독사업자일 경우에 한합니다.
- b.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활동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원인 자 및 그 배우자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 c.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 집행임원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는 피보험자가 되며 주주는 또한 그 책임범위내에서 피보험자가 됩니다.

2.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 a. 업무집행임원이외의 근로자.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 (1) 업무수행 중에 귀하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 (2) 전문직으로서 건강관리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 (3) 근로자 또는 구성원(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경우)이 소유, 점유, 임대하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 b. 귀하의 부동산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또는 단체
- c.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귀하의 재산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발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하는 배상책임 범위내에 재산관리인

- d.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직무범위내에서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이 보험증권 하에서 갖는 귀하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3.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이동장비」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 (1)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운전중인 자
- (2) 위 (1)의 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이동장비 조작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내로 하고, 이때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 a. 이동장비를 운행중인 사람의 동료에 대한 「신체장해」
- b. 귀하나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소유, 임차, 점유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신규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경영권 또는 과반 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 a.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90일까지만 담보되며, 보험기간이 먼저 끝날 때는 그때를 보험이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 b.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A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c.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에 대하여 담보B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고란에 기명피보험자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재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보 상 한 도 액

1. 회사는
 - a. 피보험자의 수
 - b.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 c.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보상한도액은 신고란 기재의 금액으로 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총보상한도액은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 a. 담보 C.에 따른 의료비 및
 - b. 담보 A. 및 담보 B.에 따른 손해배상금. 그러나 「생산물/완성작업」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손해 배상금은 제외됩니다.
3.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서 보상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담보「A」에 있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4. 위2에 있어서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B」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5. 위 2나 3의 어느 것을 적용하든 1사고당 한도액은 한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 a. 담보「A」에 의한 손해배상금
 - b. 담보「C」에 따르는 의료비
6. 위 5의 화재손해보상한도액은 하나의 화재사고로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시설의 화재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A」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한도액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위 5의 의료비한도액은 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담보 「C」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이 보험증권의 한도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연도별 및 12개월미만의 추가 기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개월미만의 잔여기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은 원보험기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일 반 조 항

1. 파 산

회사는 피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피보험자의 의무

a.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 (2) 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 (3) 사고내용 및 사고장소

사고의 통지는 손해배상청구의 통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b.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 (1) 즉시 그 청구사항과 접수일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 (2) 그리고 신속하게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회사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c. 귀하 또는 사고와 관계되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1)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할 것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회사가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회사에 협조할 것
 - (4)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장해 또는 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것
- d.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떤 비용도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소송

이 보험계약 하에서는 누구든지 아래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 a.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 b.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증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사실심리를 거친 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나 이 보험에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회사, 피보험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나 그 법률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화해서 및 면책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보험과의 관계

회사가 이 보험증권 담보 A 또는 담보 B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a. 제1순위의 보험

아래의 B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우선 적용됩니다. 이 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다른 보험이 이 보험에 대한 우선적용증권이 아닐 경우 회사는 다른 보험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 C의 방법에 따라 분담합니다.

b. 초과액보험

다른 보험이 우선순위의 보험이거나, 초과액 보험이거나, 후순위 보험 및 기타 다른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식의 보험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 보험은 초과액만 담보합니다.

(1) 다른 보험이 이 보험의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 개시이전부터 유효하거나 배상청구 기준이외의 기준으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경우로서,

(a) 이 보험의 신고란에 소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b) 이 보험의 신고란에 기재된 소급일 이후에도 다른 보험의 보험기간이 계속될 때

(2) 다른 보험이 「귀하의 작업」에 대한 화재보험, 확장담보보험, 건설공사보험, 시설 공사 보험, 기타 유사한 보험일 때

(3) 다른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일 때

(4)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 G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자동차」 또는 선박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초과액담보일 때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방어의무를 지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회사는 담보[A] 및 담보[B]의 방어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방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회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의 초과액만을 담보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회사는 이를 분담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계금액

(2) 다른 모든 보험의 면책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초과액보험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보험과 특별히 이 보험의 신고란 기재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른 보험 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분담합니다.

c. 분담방법

다른 모든 보험이 균등 액 방식에 의한 분담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또는 손해액이 전액보상 될 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보험이 균등 액 방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보상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에 대한 각 사의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보험료정산

- a.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b. 이 보험증권에 선납보험료로서 기재된 보험료는 예치보험료에 불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기간에 대한 받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정산보험료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납입하여야 하며 선납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 c.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보험료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진술사항

귀하는 이 보험증권의 다음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a. 신고란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 b. 그 기재사항은 귀하가 회사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 c. 회사는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한 것

7. 피보험자의 분리

보상한도액 및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상 특별히 양도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a. 기명피보험자를 단독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며,
- b.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이 제기된 각 피보험자별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해 지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a.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지서를 회사에 발송함으로써 해지됩니다.
- b.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해지됩니다.
 - (2) 다음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해지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제1순위 기명 피보험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 2)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때
 - 4) 피보험자가 약관12에서 정한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 c. 회사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의 최근의 주소로 통지합니다.
- d. 해지통지서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을 명기하며, 보험기간은 해지효력 발생일에 끝납니다.
- e. 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할 경우에는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료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해지한 때는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가 해지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도 해지효력은 유효합니다.
- f. 통지서를 우송한 경우 우송증명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10. 변 경

이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귀하와 회사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회사가 동의를 얻어 이 보험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보험조건은 회사가 발행하는 배서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제외되며 그 배서는 이 보험증권의 일부가 됩니다.

11.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이 보험증권과 관련되는 귀하의 장부 및 서류를 조사, 건사할 수 있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2. 조사(손해사정)

회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 a.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 b. 회사가 발견한 상황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
- c. 변경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보험가입 적합성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안전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대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 상황이

- (1)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 (2)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산정기관, 자문기관, 요율 제공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13. 보 험 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1순위 기명피보험자는,

- a. 회사에 대하여 모든 보험료납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b.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1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귀하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 증권 하에 갖는 권리 및 의무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 리 및 의무를 갖습니다.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결정되기까지는 귀하의 임시대리인이 그 재산 관리의 범위내에서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제 5 장 용 어 의 정 의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 a.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 b.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 c. 광고기획 또는 사업방식의 유용
- d.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자동차」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장비는 제외됩니다.

3.「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 a.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 b.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 A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c.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1) 장해 또는 손해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 (a) 위 A의 지역내에서 귀하가 제조, 판매한 제품
- (b) 위 A지역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의 활동. 다만 사업활동의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 지를 이탈했을 때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A에 기재한 지역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5.「손상재물」이란 아래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a.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관련되었을 때나

b. (1) 귀하의 생산물이나 귀하작업을 수리, 대체, 조정 또는 제작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행할 수 없을 때

6.「담보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 a. 시설의 임대차계약
- b. 철로부설사용계약
- c.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 또는 사용권계약
- d. 기타의 지역권. 그러나 철도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업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 e.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 f. 승강기 보수계약
- g.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제3자에게「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귀하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귀하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에서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a.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서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 b. 피보험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 A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타 기술 용역제공 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 c.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7.「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 a.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후에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b.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 c.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 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 「화물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장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8.「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 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을 말합니다.

- a. Bulldozer, 농기계, fork-lift 및 공도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 b.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 c.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 d.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천공기
 - (2) 그레이더,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 e. 위의 A.B.C.D.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지 기동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 (1) 에어컴프레서,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 장비포함)
 -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 f. 위의 A.B.C.D.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지 않고 「자동차」로 봅니다.
 - (1)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 (a) 제 설
 - (b)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 (c) 도로청소
 -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truck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3) 에어컴프레서,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 기계 포함)

9.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 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10. 「인격침해」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써 「신체상해」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 a.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 b.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 c.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치
- d.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 e.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11. a. 「생산물/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밖에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제외합니다.

-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b. 아래 시기중 먼저 도래한 때를 「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c. 다음에 기인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 「적재 및 하역」 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합니다.
-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 (3) 이 보험증권이나 회사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완성 작업

12. 「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a.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 b.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3. 「소송」이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합니다.

14. 「귀하의 생산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a.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또는 생산물
 - (1) 귀 하
 - (2) 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 (3) 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b. 위「A」의 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위「A」또는「B」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5. 「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a.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 b. 위 「A」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위「A」또는「B」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염배상책임 확장 특별약관

담보A(제1장)의 면책조항 f.(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피보험자(판매업자) 특별약관

스케줄

추가 피보험자(판매업자)성명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판매인이 영업활동 중 공급 또는 판매하는 스케줄에 기재된 「귀하의 생산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관하여는 스케줄에 기재된 아래의 판매인인 개인이나 단체도 제2장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이 보험은 판매인에 관하여 아래에 기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b. 귀하가 보증하지 아니한 명시의 보증
 - c. 판매인의 고의에 의한 생산물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경
 - d. 재포장. 그러나,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전시, 시험, 부품교환만의 목적으로 포장을 벗긴 후 다시 원상태로 재포장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e. 판매인이 생산물을 공급, 판매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검사, 조정, 시험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아니하는 것
 - f. 전시,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 그러나, 판매업자의 구내에서 생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위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g. 귀하가 공급 또는 판매한 생산물을 판매인이 또는 판매인을 위해서 상표를 붙이거나 상표를 바꾸거나 또는 다른 물건의 용기, 부품 또는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
2. 이 보험은 귀하의 생산물과 그 생산물의 성분, 부품, 용기를 구입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전문직업 부담보 특별약관

특정 전문직업 내용

- 1.
- 2.
- 3.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의 기재사항에 따릅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1장 담보B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1. 신고란에서 담보「B」의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는 담보「B」 「인격침해」로 변경됩니다.

2. 제1장 담보「B」의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는 아래와 같이 대체됩니다.

담보「B」-「인격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인격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제3장 보상한도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b. 회사는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 c. 회사가 담보「A」나 담보「B」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의하여 야기된 위반행위로 인한 「인격침해」에만 적용됩니다:

- a.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리고
- b. 귀하의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 방송, TV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제외합니다.

2) 면책조항

이 보험은 아래의 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인격침해」
 -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공표로 발생한 경우
 - (2) 보험기간 개시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공표되어 발생한 경우
 -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경우
 - (4)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경우,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제3장 보상한도액의 4.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4. 위 2.에 있어서 「인격침해」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인격침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B」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4.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광고침해」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 부담보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 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1장 담보 「A」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기재된 「폭발위험」, 「붕괴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a.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 b.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 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붕괴위험」에는 건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건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 (2) 이전, 떠받치기, 지지 건축, 건물이나 건축물의 철거, 건축 또는 빌딩 및 건축물의 건축대의 철거나 재건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지하매설물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 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제외) 부담보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이 보험은 「폭발위험」, 「붕괴위험」 혹은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a.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 b. 「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 c.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는 위험으로 기재된 작업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 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 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붕괴위험」에는 건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 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건축물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건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이전, 떠받치기, 지지 건축, 건축이나 건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건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 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변경 특별약관

- 스 케 줄 -

보상한도액

일반위험에 대한 보상총액

생산물/완성작업에 대한 보상총액

인격침해/광고침해에 대한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화재 손해에 대한 보상한도액

의료비에 대한 보상한도액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은 스케줄 또는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른 신고란 기재의 보상한도액으로 대체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조정 특별약관

아래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첨부된 스케줄에 기재된 생산물위험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 예치보험료에 불과하며, 실제 보험료는 이 보험증권 만료시에 보험기간중의 실제판매고에 따라 계산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계산된 조정 보험료가 기납입된 최저예치보험료를 초과하면, 피보험자는 그 초과분을 회사에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위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만료직후에 보험기간중의 실제 판매고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도 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 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 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 ① 보험료 : 청약일
-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 배서일
-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 ④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 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US\$ 또는 YEN)화에 해당하는 외화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공제 특별약관

스케줄

담보내용	기초공제금액과 적용기준
신체장해배상책임	_____ 배상청구당 _____ 사 고 당
재물손해배상책임	_____ 배상청구당 _____ 사 고 당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_____ 배상청구당 _____ 사 고 당

(위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초공제금액은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담보별로 적용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 「1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가.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손해배상 청구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각각

① 피해자 1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②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나. 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 ①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 ②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 (2) 신체장해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이 보험의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②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시 귀하의 의무
-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회사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보험 특별약관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1. 이 보험증권에 나오는 「회사」라는 용어는 아래에 명기된 서명회사를 의미합니다.
2. 이 보험증권은 증권상의 제반의무 또는 발생비용에 대해 아래에 명기된 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100%에 대한 비율

서명회사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외선박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본 증권이나 본 증권에 배서된 보험조건, 면책조항 및 기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체장해 나 재물손해가 피보험자가 소유,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밖에서 발생할지라도,

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운행, 임차하고 있는 선박이나.

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용 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운용하는 다른 선박의 소유, 유지, 운행, 사용, 양륙, 양하 작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기로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1. 이 보험증권은 12개월의 보험기간에 대한 계약으로써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수 있음을 합의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분납(5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 납입
제2회 분납(50%)	년	월	일	납입

(2) 4회 분납

제1회 분납(25%)	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 납입
제2회 분납(25%)	년	월	일	납입
제3회 분납(25%)	년	월	일	납입
제4회 분납(25%)	년	월	일	납입

그러나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합니다.

매회 분납보험료가 위에 합의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소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실제로 분납보험료가 납입된때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여하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이 조항에 의거 납입된 분납보험료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미분납 보험료는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에 명시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합니다.

보 험 회 사	증 권 번 호	보 험 기 간	보상한도액

위의 기재된 사항 외에 이 보험증권의 어떠한 약정사항, 조건, 신고사항, 면책조항, 제한조건도 변경, 방기 또는 확장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자력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 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 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 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나 우라늄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과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오염물 포함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피보험자(명의사용인) 특별약관

스케줄

명의사용인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귀하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스케줄에 기재된 권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그 권리자는 제2장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의 담보「C」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1. 피보험자의 업무에 등록된 어린이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법인 위험(수탁물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수탁받은 물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수탁물건에 관련된 작업으로 발생하는 「신체 장애」,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증진 또는 미용행위 부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업무내용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제1장의 담보 A 및 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1. 아래 업무수행상의 부주의
 - a. 의료, 외과, 치과, 엑스선, 간호, 처치 또는 이에 관련된 음식물 제공
 - b. 건강증진 또는 그 처치행위
 - c. 미용행위
2. 투약, 혹은 의료, 치과 혹은 외과기구 공급
3. 사체취급, 검시, 신체기관의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사, 설계사 또는 측량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2.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품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구내의 명세와 장소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 보험증권의 제1장 담보 C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장의 추가지급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이 보험으로 보상하는 신체장해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생산물 부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특정생산물 내용 :

(위의 기재란에 생산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스케줄에 기재된 특정생산물의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작업 부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특정작업 내용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스케줄에 기재된 특정 작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특정구내 :

특정사업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광고침해」 및 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
2. 스케줄에 기재된 사업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구내의 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특정구내의 장소와 내용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와 그 구내에 있는 시설의 소유, 관리, 사용
2. 그 구내에서의 모든 업무와 그 구내의 소유, 유지,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인 구내외의 모든 업무
3. 그 구내에서 제조, 분배되는 모든 제품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동경기 참가자 부담보 특별약관

스 케 줄

업무내용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후원하는 운동경기에 기인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또는 시설물 이동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자동차」 또는 「이동장비」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동기간이라 함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길 때 시작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역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재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1. 이 보험은 제1장 담보 A의 2. 면책조항의 마지막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 보험은 제3장 보상한도액의 제6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고란에 기재된 「화재배상책임」은 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탁물건 부담보 특별약관

업무내용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의 업무에 관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1.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거나
2. 소유·임차한 구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사, 감정 및 측량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검사 또는 자문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 담보「A」 및 담보「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2.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사관리 부주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장의 담보「A」 및 담보「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사유로 발생한 「신체장해」, 「재물손해」,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계사, 기사, 측량사가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설계명세서를 작성, 승인, 작성상의 부주의
2.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귀하나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감독, 품질관리 또는 기술용역 제공

그러나, 귀하, 귀하의 근로자 또는 귀하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사고발생일자나 손해배상청구 일자에 아래에 명시된 신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의 효력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기초보험 명세)

보 험 회 사	증 권 번 호	보 험 기 간	보 상 한 도 액

고용주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명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
 - (2)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생긴 손해
 -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 (4)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5) 작업장 내에서의 간이치료비
 -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 (8) 위 (7)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 (9) 피보험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다른 가중된 배상책임
 - (10)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 (1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12)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13)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14)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염사고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Ⅱ)

제1장 담보「A」의 면책조항 바.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특별약관

1.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의 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 선조사(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 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11)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13)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 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6)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8)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9)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0)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1)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2)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3)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4)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5)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6)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 (27)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내 용
시 설 명 세	상호 (성명) : 구 조 : 면 적 : (옥내: 옥외:)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주차 대수 : 관리인여부 :
업 무 내 용	

서기2000년 부담보 조항

본 보험계약의 제조건 및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A. 피보험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또는 매체,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제품, 서비스, 자료, 기능이 어떤 날짜를 실제 달력 날짜로 정확히 인식, 처리, 구별, 해석 또는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또는 대두된 고장, 오작동, 부적합성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 손해 및 결과적 손해를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B. 회사는 논리 체계나 작동상의 결함 또는 특성을 교정하기 위하여 전자데이터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 기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C. 회사는 상기 A항에 기술된 잠재적 또는 실제적 고장, 오작동 또는 부적합성을 확인, 시정 또는 테스트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제공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해 제공된 조언, 컨설팅, 설계 평가, 검사, 설치, 유지보수, 수리 또는 감독의 실패, 부적절함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D. 상기 A, B 또는 C항에 기술된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는, 다른 사고 원인이 동시에 또는 어떠한 순서로든 경합하여 기여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기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본 보험계약의 기존 제조건, 제규정 및 면책사항을 변경, 개조, 포기 또는 연장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테러 면책조항

본 특별약관은 모든 담보 지역에 제공되는 보험 조건을 변경합니다.

회사는 실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테러 사건을 저지하거나 이에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테러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손해나 손실은 해당 손실에 동시적으로 또는 어떠한 순서로든 경합하여 기여한 다른 사고 원인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테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명, 단체 또는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 또는 이를 준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 a. 무력·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 b. 위험한 행위의 감행이나 위협; 또는
- c. 전자, 통신, 정보, 기계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행위의 감행이나 위협

2.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d. 그 효과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일부를 위협·협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마비시키는 경우, 또는
- e. 그 의도가 정부를 위협·협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 또는 정치적·이념적·종교적·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특정 철학이나 이념을 표명(또는 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1 호 및 2 호에 더하여, 손해 및 손실의 금액에 관계없이 본 테러 면책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러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1. 핵 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을 포함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핵반응 또는 방사능 오염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 2. 병원성 또는 독성이 있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질을 살포하거나 도포하는 방식으로 감행되는 사건, 또는
- 3. 병원성 또는 독성이 있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물질이 방출되고, 해당 물질의 방출이 테러의 목적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면책조항은 인적 상해 사고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신체적 손상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조사 협조 조항 (ACE)

본 약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본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a) 출재보험사는 본 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재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b) 출재보험사는 해당 보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손해액 사정 및 합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c) 재보험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타협도 할 수 없으며, 보상 책임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본 조항 외의 다른 모든 제조건 및 제규정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조사 협조 조항 (Korean Re)

본 재보험 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a) 출재보험사는 본 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b) 출재보험사는 해당 보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c) 주도적 재보험자(Leading Reinsurer)는 당해 보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협상, 손해액 사정 및 합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리할 손해사정사 및/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집니다.
- (d) 주도적 재보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합의나 타협도 할 수 없으며, 보상 책임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위문금(Ex-gratia) 지급 요청은 주도적 재보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 외의 다른 모든 제조건 및 제규정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테러행위 보장제외 특별약관(LMA2952)

본 보험계약 또는 이에 첨부되는 특별약관의 다른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발생에 동시적으로 또는 다른 순서로 기여한 타 원인이나 사건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성격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출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특별약관의 목적상 테러행위라 함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개인 또는 집단이 단독으로 또는 특정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여 혹은 이와 연계하여 행하는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및/또는 그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본 특별약관은 테러행위를 통제, 예방, 억제하거나 테러행위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모든 조치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성격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출 역시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보험자가 본 면책 조항에 근거하여 특정 손실, 손해, 비용 또는 지출이 본 보험의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반대의 사실(테러가 아님을)을 입증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별약관의 어느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쟁 면책조항

본 보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전쟁, 침략, 외국의 적대 행위(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함), 내란, 반란, 혁명, 민중 봉기 수준의 대규모 소요, 폭동, 군사력의 행사, 계엄령 선포 또는 적법한 정부 당국의 집행 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손실 또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손해가 본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전쟁 등과 무관한 사고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본 조항 외에 보험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테러 면책조항 (Terrorism Exclusion Clause)

회사는 실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테러 사건을 저지하거나 이에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테러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나 손실은 해당 손실에 동시적으로 또는 어떠한 순서로든 경합하여 기여한 다른 사고 원인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조항에서 테러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단체 또는 재물에 대한 활동을 말합니다.

1. 다음의 행위 또는 그 준비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

- a.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 또는
- b. 위험한 행위의 실행이나 위협, 또는
- c. 전자, 통신, 정보, 기계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의 실행이나 위협, 그리고

2.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a. 정부나 민간인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위협 또는 강요하거나, 경제의 특정 부문을 교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또는
- b. 정부를 위협·강요하거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특정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를 표명(또는 반대)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본 조항 외에 보험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 관련 특별약관

동 증권에서 클레임과 관련된 모든 비용손해는 보상한도액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효능불발휘 특별약관

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석면 보장제외 특별약관

회사는 이 증권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격침해, 신체장해, 재물손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1) 석면이나 석면이 포함된 제품 또는 생산물의 흡입, 섭취, 물리적 노출
- (2) 어떤 제품, 제조물 또는 구조물을 건축이나 제조할 때 석면의 사용
- (3) 어떤 제품, 제조물 또는 구조물에서의 석면제거
- (4) 석면이나 석면이 포함된 제품 또는 제조물의 생산, 캡슐보호, 운송, 운영, 공급, 판매, 구매, 채광, 소비 또는 처분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타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 목적물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구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합니다.

수탁재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통약관 제 IV-1 조(일반배상책임 담보) 면책사항 제 10 호-(d)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정당하게 보호, 관리, 통제(Care, custody or control)하고 있는 수탁재물(동산)에 발생한 '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합니다.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보석, 통화, 유가증권, 수입인지, 모피, 회화 또는 골동품, 와인 및 주류, 담배, 유리제품, 도자기, 화장품, 의약품, 가축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다만, 피보험자의 투숙객이 구내 금고에 수탁 임치하여 보관 중이던 투숙객의 소유물(금·은제품, 보석, 시계, 모피, 의류, 도자기, 화장품)에 발생한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 자체의 고유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자연적인 마모(Wear and tear) 또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발효, 곰팡이, 부패, 변색, 악취 등 열화, 녹 및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한 재물의 손해 또는 파손.
 3. 원인을 불문한 모든 간접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4. 피보험자의 가족, 친척, 임직원, 동거인, 하숙인 또는 경비원이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
 5. 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정부(정식 정부 또는 사실상의 정부 체제 포함) 또는 공공기관의 명령에 따른 몰수, 징발, 수용 또는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
 6. 재물의 가공 또는 처리 작업 중에 발생한 손해.
 7. 오배송, 도난, 일부 도난 및 감량(중량 감소)으로 인한 손해.
 8. 배관, 난방, 냉동 또는 공기조화 장치, 소방용 소화전, 산업용 또는 가정용 기기에서의 물 또는 증기의 방출, 누출, 범람 또는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로부터의 소화약제 등의 방출로 인한 손해.
 9. 결함이 있는 지붕, 문, 창문, 환기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직접 유입된 비 또는 눈으로 인한 손해. 다만,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보상합니다.
 10. 수탁자(인도처)에게 인도(배달)를 완료한 후에 발견된 손해.
 11. 냉동(냉장) 설비나 장비의 파손 또는 고장으로 인한 온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냉동(냉장) 물품의 손해.
 12. 피보험자의 임직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1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중단 및 재검토 조항

이 계약의 전체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기간의 최초 ()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후 ()개월간의 보장여부를 재승인합니다.

1. 회사는 계속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재승인검토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회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후 ()개월간의 재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a) 이후 기간에 대해 재승인을 거절할 수 있을만한 중대한 위험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 b) ()%를 초과한 위험의 증가가 있었던 경우
 - c) () 보다 큰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이 적용되는 해당 국가의 법률 혹은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개월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회사는 위의 1 항, 2 항에 따라 이 계약의 보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 사실을 보장중단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는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보장 중단일로부터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주차 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통약관 제 SECTION I 의 담보 A(Coverage A) 면책사항 제 J-(4)호 및 본 보험증권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리주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관리 하에 수탁된 자동차(Auto)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상합니다.
 2. (면책사항)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 전쟁, 폭동, 반란, 혁명,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3) 지진, 화산 분화, 홍수(범람), 해일(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4) 핵물질(핵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및 핵분열 생성물 포함), 방사성, 폭발, 방사선 조사, 방사능 오염, 기타 위험한 특성 또는 이러한 특성으로 유발된 손해로 인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5) 피보험자가 타인과 체결한 배상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인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다만, 그러한 계약이 없었더라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했어야 할 손해배상책임액은 회사가 보상합니다.
 - 6) 오염물질의 분산, 방출, 유출, 누출, 탈출로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및 그것이 누적적이든 돌발적이든 관계없이 오염물질의 정화 또는 제거를 위한 모든 비용.
 - 7)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을 불문한 모든 통제 행위 포함)하는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 다만, 본 면책사항은 주차를 위해 수탁된 자동차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8)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고용관계 중의 업무상 '신체장해(Bodily injury)'.
 - 9) 일반적인 유지보수 및/또는 수리 작업을 제외한, 구내 건물의 수리, 재축, 건설,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배상책임.
 -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통제(적재 또는 하역 작업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 다만, 본 면책사항은 대리주차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수탁된 자동차의 모든 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1) 피보험자가 판매, 양도 또는 폐기한 재물에 대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및 해당 재물 자체에 생긴 손해.
-

- 12) 물리적인 훼손이나 파손을 입지 아니한 유체재물의 사용불능(Loss of use)으로 인한 모든 배상책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 a) 의무 불이행, 자연 또는 이행 지체
 - b)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생산물(Products)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Work)
 - 13) 다음에 해당하는 음식물 또는 재물에 생긴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a)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된 것
 - b)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 구내 외에서 사용된 것
 - c) 해당 음식물 또는 재물 자체에 생긴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14) 완료(또는 인도)되었거나 포기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배상책임 및 해당 작업물 자체에 생긴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측량사, 이발사, 미용사, 안마사, 침사(구사/뜸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16) 가스사고 배상책임이나 화재보험의 신체장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등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17) '지하재물(Underground property)'에 생긴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또는 파손된 지하재물로 인해 다른 재물에 발생한 결과적인 '재물손해'.
 - 18) 먼지, 티끌(분진), 폐기물 또는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19) 타이어, 튜브, 부속품, 기계적 장치, 네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절도나 강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0) 자연적인 마모(Wear and tear), 동결(얼음),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으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1) 자동차에 고정된 장치(부착물) 외에 자동차 내에 남겨둔(방치된) 휴대품 및 소지품에 생긴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몰수, 국유화, 징발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3)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알코올성 음료 및 약물의 영향으로 주정 상태에 있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4) 자동차의 모든 수리 작업(부품의 수리 및 교체 포함)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25) 동급 차량의 대차료(렌트비)를 제외한 자동차의 사용불능 손실을 포함한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다만, 수탁된 해당 차량 자체에 대한 대차료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26) 벌과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 27) 지정된 수탁 구역, 주차 공간 및 그 사이의 이동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8) 수탁 구역과 주차 공간 사이의 주차 이동 거리 2,000 미터를 초과하여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 29) 대리주차원(Valet parker) 본인에게 생긴 모든 신체 장애 또는 손해.
- 30) 적법한 전용 주차 구역을 제외한 인접 공도(일반 도로), 길어깨(갓길) 또는 보도(인도) 주차 등 불법 대리주차로 인해 발생한 모든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

3. (용어의 정의)

- 1) "대리주차(Valet Parking)"라 함은 제 3 의 대리주차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자동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 보험에서는 해당 사업장(업소)에서 무상으로 자체 제공하는 주차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2) "자동차(Auto)"라 함은 공도에서의 주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육상 모터 차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에는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또는 "이동장비(Mobile equipment)"와 같은 기계나 장비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3) "대리주차 서비스 배상책임"의 담보 범위에는 수탁 구역, 주차 공간 및 그 사이의 공도를 포함한 이동 경로가 포함됩니다.

4. (기타사항)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업체명(성명) :	
주소:	
명세	
서비스 지역(수탁구역) 및 주차장 위치:	
서비스 지역과 주차장 간의 거리:	
운전자(인원수) :	
주차 빈도(1 일당 차량 대수) :	
업종	

렌트비 지원 배상책임 특별약관

담보 위험

“대리주차 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정의된 간접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면책사항 제(2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1. 피보험자의 선택 특별약관

본 특별약관은 “대리주차 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항에 적용되며, 회사는 본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에 생긴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손해”의 조건 대신 본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직접 손해 또는 파손

2. 용어의 정의 (Definition)

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본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또는 파손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대리주차 서비스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파손을 의미합니다.

※ 수탁 자동차: 대리주차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탁된 타인 소유의 자동차.

렌트비(대차료)에 대한 보상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본 특별약관에 의하여 직접 손해 또는 파손에 대한 보상책임을 발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렌트비(대차료) 청구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가 부담하는 렌트비(대차료) 청구에 대한 보상책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기준 금액

A. 렌트카(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a) 대여자동차의 차종과 관련하여, 렌트비 보상금액은 운전자가 없는 동종의 대여자동차(렌트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차량과 유사한 차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거나 다른 차종 중 동종의 차량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b)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실제 렌트 비용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개발원”이 발행한 “휴차료 기준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간

A.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일을 한도로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수리 불가능한 경우(전손): ()일.

렌트카 면책 기간(대기 기간): ()일.

4. 피보험자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명된 자로서, 보험 실익이 있는 자신의 손해 또는 파손에 대하여 보험자(회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 및/또는 대리주차원 명부에 대리주차 운전자로 회사에 통보(보고)되지 아니한 다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종합배상책임보험(CGL) 보통약관” 및 “대리주차 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기술된 손해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 규정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보통약관 및 관련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아손해 면책조항

본 보험계약은 치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수 물품 구매자 특별약관

1. (적용범위)

- ① 본 특별약관은 '다수 물품 구매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를 위한 보험계약에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라 함은 자신의 통제,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에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며 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 ④ 피보험자의 수는 100 명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 (적용기준)

본 특별약관이 첨부되는 경우, 본 보험계약은 각 피보험자와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보험의 약관 조항들은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3. (피보험자의 추가, 해지 또는 대체)

피보험자를 추가, 해지 또는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변경 사항을 매월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본 보험계약의 기간은 1 년이지만, 각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구매일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최대 3 년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특별규정)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당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해지 또는 대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보험료는 익월 ()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이 상기 ①항에 따르는 경우, 피보험자가 본 보험에 추가된 날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5. (보험증권의 교부)

- ① 회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개별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기타 약관의 준용 등)

본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보통약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본 보험은 다른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 보험을 초과하여 보상하며,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소멸되더라도 본 보험이 하위 담보로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상기 기술된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는 병존적(동시적)으로 기여했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인과관계의 순서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모든 조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염배상책임 면책조항

보통약관 제 SECTION I 의 담보 A(Coverage A) 면책사항 제 f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계약은 오염물질(Pollutants)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재)보험자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이 유엔(UN) 결의에 따른 제재, 금지, 제한사항을 위반하거나, 유럽연합(EU), 영국(UK) 또는 미합중국(USA)의 무역 또는 경제적 제재조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재)보험자를 제재에 노출시키게 되는 범위까지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보험계약에 따른 어떠한 보험금의 지급이나 이익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퀵서비스 운송인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담보위험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 5 조(담보위험)에서 정한 위험 중 피보험자가 퀵서비스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탁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전체 운송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수탁화물의 시가를 한도로 화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상한다.

1. 잔존물 제거비용, 구조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다만, 손해방지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 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용에 한하여 보상한다.

2. 피보험자의 손해경감의무(Sue and Labor)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

3.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비용

4.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회사는 해당 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청구 해결을 위하여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제3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화물)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거나 특별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화물은 이 특별약관의 수탁화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원고, 설계도서, 모형, 증서, 문서, 사진,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미술품 및 골동품

2. 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 및 인지류

3. 시계, 담배 및 모피류

4. 유리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쟁, 혁명, 반란, 내란, 테러, 폭동, 소요, 파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화산분출, 홍수, 해일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와 제 3 자 간의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다만, 해당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한다.
5. 핵물질(사용된 핵연료 및 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한 특성으로 인한 손해
6. 전항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또는 전자장(EMF)으로 인한 손해
8. 오염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유출 또는 확산으로 인한 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점진적 발생 여부 또는 급격한 사고 여부를 불문한다.)
9. 수탁화물의 고유하자(Inherent Vice), 자연 마모 또는 자연소모, 자연발화, 폭발, 곰팡이, 부패, 변색 기타 유사한 원인으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의 대리인, 사용인, 가족 또는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한 손해
11. 화물의 포장불량 또는 차량 덮개(고정 덮개 포함)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 충돌사고 없이 화물 상호 간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 조에서 정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피보험자가 초과적재 외의 사고원인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제 적재량과 적재기준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13. 차량 충돌사고 없이 냉동·냉장설비 고장 또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인한 온도변화로 발생한 손해
1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 압류, 파괴 또는 국유화로 인한 손해
15. 분실 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설치 또는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손해
17. 수탁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 일이 경과하여 발견된 손해
18. 이사화물과 관련된 손해
19.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창고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 중 발생한 손해

제5조 (보험금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인도일 현재 목적지에서의 수탁화물 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세화물의 경우

1. 수출화물은 송장(Invoice)에 기재된 FOB 가격
2. 수입화물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면장이 없는 경우 송장에 기재된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 가격)을 한도로 한다.

② 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상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손해배상청구액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은 보상한도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 ④ 제 2 조 제 2 항 제 1 호의 비용은 15 만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제6조 (용어의 정의)

1. 운송기간

"운송기간"이란 화물을 수탁받은 시점부터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인도 완료될 때까지의 전체 운송기간을 말한다.

2. 유리제품

"유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 ① 유리, 도자기 또는 자기(磁器)로 제조된 물품
- ② 유리, 도자기 또는 자기로 제조된 용기 및 그 내용물
- ③ 유리, 도자기 또는 자기로 제조된 부품 또는 해당 부품 원가가 완제품 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3. 도난 및 분실

"도난"이란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불법 침입 사실을 입증하고 경찰서가 도난신고를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모든 물품 소실은 "분실"로 본다.

불완전포장위험 확장담보 특약

제1조(보상하는 손해)

퀵운송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1 호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에 열거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수탁운송화물의 불완전포장과 덮개(차량 부착 덮개 포함)를 불완전하게 설치 한데 기인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타 차량 또는 물체에 충돌없이, 운송차량 내에서 상호 충돌 및 접촉에 기인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의 사고원인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1. 비나 눈 또는 이와 유사한 날씨상황에서 덮개를 씌우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운송차량의 잠금 장치를 채우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3. 기타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수탁화물의 포장 또는 적재(결박)의 방법이 현저하게 잘못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중지 및 재검토 조항(코리안리)

본 보험계약은 스케줄에 기재된 총 계약 기간 동안 발행된 다년도 계약입니다. 피보험자는 매년 도래하는 계약 점검일 30 일 전까지, 보험자가 위험의 진행 상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청약서 양식 또는 보험자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자는 다음 계약 점검일까지 담보(보장)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1. 보험료 납입조건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2. 위험에 중대한 변경(Material Change)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변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보험자 및/또는 재보험사가 피보험자 측의 사기, 비위 행위(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b. 피보험자가 다른 조직과 합병 또는 통합되어, 피보험자가 존속회사나 지배회사가 되지 않는 경우
 - c. 피보험자의 해산, 청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자산이나 사업에 대하여 관리인, 수탁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선임된 경우
3. 발생손해액(담보 금액, 지급 준비금 또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미화 5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운동선수/체육 활동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본 보험계약에 포함되거나 이에 배서된 제반 조건, 면책조항, 규정 및 약관에 따르고, 피보험자가 약정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전제로, 회사는 피보험자가 체육활동(Athletics)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하여 본 보험계약의 보상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합니다.

제 1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신체상해(Bodily Injury)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a. 모든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 b.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임차인을 위하여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근무하도록 고용된 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 c.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구내(Premises) 중 상해를 입은 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상해
 - d. 피보험자의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재해보상제도, 장애급여 관련 법령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하는 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 e. 「생산물·완성작업위험(Products-Completed Operations Hazard)」에 해당하는 신체상해
 - f. 보장조항 A(Coverage A)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신체상해
 - g. 전쟁(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합니다) 또는 전쟁에 수반되거나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행위나 상황으로 인한 신체상해. 이 경우 전쟁에는 내전, 폭동, 반란 및 혁명을 포함합니다.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피보험자(지정 개인 또는 단체) 특별약관

본 보험계약에 다음 규정을 추가합니다.

보험증권 또는 스케줄에 기재된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피보험자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피보험자 지위는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수행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구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차보험(선순위 보상) - 지정계약 특별약관

본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조건 중 「타보험(Other Insurance)」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 또는 명세서(Schedule)에 기재된 지정계약(Designated Contract)에 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 적용됩니다.

본 보험이 적용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유효하고 회수 가능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본 보험은 일차보험(Primary Insurance)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타보험 또한 일차보험인 경우 회사는 아래 제 2 조에 따라 다른 보험과 손해를 분담합니다.

① 모든 타보험이 균등분담방식을 허용하는 경우 회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손해를 분담합니다.

이 경우 각 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도달하거나 손해가 전부 보상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② 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균등분담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상한도액 비례분담방식에 따라 손해를 분담합니다.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부담액은 모든 관련 보험의 총 보상한도액에 대한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액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리카 위험 보장 제외 특별약관

본 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실리카 및/또는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의 취급, 제거, 철거, 해체, 보관, 운송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
- 2)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 규제(Control of Work Regulations)에 의거한 조사·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구

또한 본 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실리카 및/또는 실리카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 섭취, 존재 또는 노출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청구되거나 지적된 손해에 대한 책임
- b) 실제 또는 청구된 건강 위험 상황으로 인해 건물 및/또는 구조물에서 실리카 및/또는 실리카가 포함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 c) 위 a) 또는 b)로부터 발생한 책임을 주장하는 청구나 소송에 대한 방어 의무 및 그로 인한 방어 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본 특별약관은 다른 약관의 조건, 제한 및 제외 규정에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EMF·석면·실리카 위험 보장 제외 특별약관

본 보험은 본 약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EMF(전자기장), 석면, 실리카로 인한 손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조정 특별약관 (Ⅱ)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삭제 또는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의 추가 보험료는 익월 ()일까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①항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되는 경우, 보상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추가된 날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벌 보장 확장 특별약관

본 보험 또는 이에 부가된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한민국 「OOOO 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이 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된 행정벌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위하여 보상합니다.

“행정벌”이라 함은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명령받은 행정상 또는 민사상의 금전적 제재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의도적인 작위·부작위로 인하여 부과된 행정벌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은 행정벌에 한하여 적용되며, 행정벌 이외의 벌금, 과료, 기타 형사상 제재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적 부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a. 회사는 이 보험이 적용되는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금 이외의 비용보상」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의 지급 또는 서비스 수행에 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어느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입은 모든 "인격권침해" 및 "광고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상 보상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고를 조사하고 청구 또는 "소송"을 합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판결금 또는 합의금의 지급으로 해당 보험가입금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b. 이 보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격권침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1) 보험기간 중 보장지역(Coverage Territory)에서 행하여진 위법행위(Offense)로 인하여 발생한 것
- (2) 광고, 출판,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업무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c. 이 보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광고침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1) 보험기간 중 보장지역에서 행하여진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 (2) 피보험자의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보험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인격권침해 또는 광고침해

- (1) 피보험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 공표한 자료로부터 발생한 경우
- (2) 최초 공표가 보험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진 자료의 구두 또는 문서상 공표로부터 발생한 경우
- (3) 피보험자가 직접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고의적으로 형벌법규 또는 조례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 (4) 피보험자가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약 또는 협약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였을 책임은 제외합니다.

b. 광고침해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다만, 묵시적 계약(Implied Contract)에 의한 광고 아이디어의 부당사용(Misappropriation of Advertising Ideas)은 제외합니다.
 - (2)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부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 (3)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잘못된 표시로부터 발생한 경우
 - (4) 광고업, 방송업, 출판업 또는 텔레비전 방송업을 영위하는 피보험자가 행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과실·착오 및 누락 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다른 조건, 면책사항 및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한도액 : 보험증권 기재와 같음

착오 및 누락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계약의 면책사항, 조건 및 제한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착오 또는 비의도적인 누락만을 이유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또는 손상이 이 보험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험목적물의 소재지에 대한 기재상의 착오
2.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보험가입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 a. 이 보험의 보험개시일 현재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장소
 - b.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새로 취득, 임차 또는 사용하게 된 장소
3. 이 보험의 담보대상 재산이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회사는 위와 같은 착오 또는 비의도적인 누락이 없었더라면 이 보험에서 보상되었을 범위에 한하여 해당 직접적인 물적 손해 또는 손상을 보상합니다. 이 추가담보의 적용을 위하여 피보험자는 착오 또는 비의도적인 누락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정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은 1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해당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로 적용되고 보험가입금액에 추가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자 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

회사는 「보상항목 A.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 배상책임」의 면책사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차한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급책임(제품판매)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전에 발생한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조 및 공급한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증권 및 약관의 모든 조건, 면책사항 및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상 가중책임 면책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타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중된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제 1 장 보상항목 A 의 면책사항 나. (1)에 적용됩니다.

1.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조례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a.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합니다)이 경작·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임산물 또는 양식수산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야생동물이 가한 피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조례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

b.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등이 사육하는 가축의 신체에 야생동물이 직접 가한 피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조례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

c.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 주민이 영농활동 등 생산활동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조례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 농업인 등 또는 주민으로부터 최초로 신고된 피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상한 손해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청구기준일

위 "1. 보상하는 손해"의 ②에서 "보험기간 중 농업인 등 또는 주민으로부터 최초로 신고된 피해"의 기준일은 농업인 등이 사육하는 가축의 신체에 야생동물이 직접 가한 피해의 경우 피해 발생일이 아닌 농업인 등이 해당 피해를 발견하고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청구한 날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2) 이 보험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지진, 화산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반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비상사태로 발생한 손해

5) 「핵연료물질(사용된 핵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6) 위 5)에 해당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 또는 방사선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7) 오염물질의 살포, 배출, 누출, 방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점진적 또는 돌발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8)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농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한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9) 농업인 등이 농작물 등 또는 가축에 대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보험의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a. "야생동물(Wild Animal)"이라 함은 다음의 동물을 말합니다.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산·들 또는 하천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 또는 생장하는 야생생물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종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야생동물

b.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식량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원예작물, 버섯류 및 뽕나무를 말합니다.

c. "임산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묘목, 유실수, 조경수, 임산버섯류, 산채류, 야생화 및 그 밖에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을 말합니다.

d. "양식수산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어가가 양식하는 어류, 패류, 해조류 및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말합니다.

e.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 2 조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 조에서 정한 가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동물을 말합니다.

f.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 3 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1,00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2) 330 ㎡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시설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 3) 대가축 2 두 이상, 중가축 10 두 이상, 소가축 100 두 이상, 가금류 1,000 수 이상 또는 꿀벌 10 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 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인 자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g.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3 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 년 중 90 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 만원 이상인 자
- 4) 「산림조합법」 제 18 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임업에 종사하는 자

h.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어업인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i. "주민"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j. "가축피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k. "인적피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에 직접 발생한 피해를 말합니다.

l. "조례"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근거로서 피보험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증기 공급 중단 또는 변동 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증기 공급 중단 또는 공급량·공급압력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 3 자 신체손해 및/또는 제 3 자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증기 공급의 중단 또는 변동이 피보험자의 발전설비, 공급설비 또는 송출설비의 유지·보수, 교체 또는 개량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데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
2. 증기 공급의 중단 또는 변동이 피보험자의 증기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닐 것
3. 계약상 책임(Contractual Liability)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의 결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재무적 손해(Financial Loss)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특정 청구가 보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면 이 보험에서 보상되지 아니하였을 배상책임까지 보상하도록 보험의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상 사고 면책 특별약관

회사는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면허 장비운용 면책 특별약관

회사는 무면허에 의한 장비의 운용으로 발생한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청구 협조 특별약관(NMA2737)

이 재보험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은 이 재보험계약에 따른 재보험자의 책임 발생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 (a) 출재사는 이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재사에 제기된 청구 또는 장차 그러한 청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정을 통지받은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사실을 재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b) 출재사는 위 (a)에 따라 통지된 청구 또는 예상 청구와 관련하여 출재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청구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c) 출재사는 위와 같이 재보험자에게 통지된 청구의 조사, 손해사정 및 합의에 관하여 재보험자 및 재보험자가 지정한 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

복수 피보험자 특별약관

- i)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운영되는 경우, 이 복수 피보험자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험증권이 발행된 것과 동일한 방식 및 범위로 이 보험을 적용합니다. 다만,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총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및 각종 양해각서 또는 특별약관에 정한 세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ii) 보험자가 하나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만큼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감소하며, 적용되는 경우 총 보상한도액 또한 그 범위 내에서 감소합니다.
 - iii) 피보험자들은 언제나 피보험자 상호 간에 체결된 각종 계약을 유지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손해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 권리 및 구제수단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iv) 보험자는 피보험자 중 어느 한 피보험자가 저지른 사기,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 고지의무 위반 또는 이 보험의 보증조항이나 조건의 위반과 같은 행위(이하 "면책유발행위"라 합니다)가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 다만, 이 복수 피보험자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피보험자가 행한 면책유발행위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면책유발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vi) 보험자는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위권 또는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합니다.
 - vii) 다만, 면책유발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대위권 또는 구상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가 현재 또는 과거에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viii) 하나 이상의 피보험자가 면책유발행위를 한 경우, 프로젝트의 대주단 또는 장래의 대주단으로서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자를 제외한 다른 피보험자는, 그 면책유발행위로 인하여 보험자가 이미 다른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 손해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는 이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손해 면책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분진 및 소음 면책 특별약관

회사는 분진 및/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기장(EMF)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a) 전자기장(Electro-Magnetic Fields, EMF)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장에 기인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배상책임
 - (b) 전자기장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감소
 - (c) 전자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손해(Personal Injury) 또는 재물손해(Property Damage)를 원인으로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방어비용이나 방어 의무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피보험자(제조업자)가 제조한 생산물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제조물책임법 제 2 조의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2. "제조물"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 또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4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 항 및 제 10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책임법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제조물을 공급한 경우
2.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손해배상금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 4 조(보장지역)

이 특별약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등 면책 특별약관

이 보험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브리오 패혈증, 소해면상뇌증(광우병), 구제역, 전자기장, 석면, 분진, 먼지 또는 성능미달·이행불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옥외간판 및 지게차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피보험자 구내에서의 옥외간판 및 지게차의 운행 또는 사용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사업장 포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패키지보험증권의 배상책임 담보에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와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보통약관 및 부속 특별약관의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을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업종별 및 담보위험별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개시 전에 예상 위험노출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정한 기일까지 매월 각 사업장의 소재지, 면적 및 운영기간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 후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이 보험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 또는 이후에 첨부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약관 및 부속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대차비용 추가보상특약

1. 보상하는 손해

보험자는 차고보관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손해 또는 멸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의 수리 또는 대체기간 중 손상된 자동차와 동급의 자동차를 임차함으로써 실제 부담한 대차비용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기간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대차비용의 범위

보험자가 보상하는 대차비용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보험 특별약관

- 보험자의 책임: 대인·대물배상책임(제 3 자배상책임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
- 피보험자의 공동보험 부담률: (%)
-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총 손해액 - 자기부담금)×(100% - 피보험자의 공동보험 부담률)

다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케줄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경비업자 특별약관 (1)

제 1 조 (사고)

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아래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 (면책)

회사는 다음의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테러행위, 폭동, 소요,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다음의 배상책임
 - A.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한 사고에 기인한 손해
 - B.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피보험자와 제 3 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6.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일출(溢出)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오염물질 제거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이는 그 손해의 발생이 통상적이었는지 또는 우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주택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단독주택의 경비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9.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경보설비 또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화폐, 수표,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금·은 등), 시계, 모피, 문서, 도화, 골동품, 설계도면, 장부 및 원고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
 13. 제 3 자에 대한 불법체포, 구금, 감금, 허위고소, 사생활 침해, 무단침입, 강제퇴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총기, 도검 또는 경비견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피보험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일반 대중이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경기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이 개최되는 시설이나 장소를 경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자격이 없는 경비원을 고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경비업무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에너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기타 무형의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피보험자가 경비하는 재물에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
23.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또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피보험자의 의무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전자파 또는 전자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경비업자 특별약관(1)(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면책) 제 8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시간 중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경비업자 특별약관(1) 제 2 조(면책) 제 9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근무시간 중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지 및 재검토 조항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개월 경과 후 누적손해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회사는 상호 합의에 따라 보험조건 및/또는 보험료의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새로이 추가되는 위험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누적손해율: (누적 지급보험금 + 재검토 시점의 지급준비금 + 누적 손해조사비용) /
누적보험료(예수보험료 포함)

사이버 면책조항

1. 전자정보 면책

보험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 a) 이 보험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전자정보(ELECTRONIC DATA)의 멸실, 손해, 파괴, 변형, 삭제, 훼손 또는 변경과 그로 인한 사용불능, 기능저하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 또는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손해에 다른 원인 또는 사고가 동시에 또는 어떠한 순서로든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전자정보라 함은 전자적 또는 전자기계적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장비에 의하여 전달, 해석 또는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사실, 개념 및 정보를 말하며, 데이터의 처리·조작 또는 해당 장비의 운용·제어를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기타 부호화된 명령을 포함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라 함은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스스로 전파되는 훼손적, 유해한 또는 권한 없는 명령이나 코드의 집합을 말하며, 악의적으로 삽입된 권한 없는 명령이나 코드(프로그램 형태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는 트로이 목마, 웜, 시한폭탄 및 논리폭탄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b) 그러나 위 a)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담보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보험의 모든 약관조건 및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담보위험

화재

낙뢰

2. 전자정보처리매체의 평가

보험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이 보험의 목적물인 전자정보처리매체가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물적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산정기준은 빈 저장매체의 교체비용에 백업자료 또는 직전 세대의 원본자료로부터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위 비용에는 조사비용, 연구비용, 엔지니어링비용 또는 해당 전자정보를 재생성·수집·재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상된 매체를 수리, 교체 또는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빈 저장매체의 비용으로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해당 전자정보가 피보험자 또는 기타 제 3 자에게 가지는 가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전자정보를 재생성, 수집 또는 재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IT 명확화 약정

본 약정에서 보상하는 재물손해라 함은 재물 자체의 물리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재물 자체의 물리적 손상에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래 구조가 삭제, 훼손 또는 변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한 변경은 재물 자체의 물리적 손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약정에서는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A.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멸실 또는 손해, 특히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래 구조가 삭제, 훼손 또는 변형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한 변경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기업휴지손해. 다만,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멸실 또는 손해가 본 약정에서 보상하는 재물 자체의 물리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합니다.
 - B.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사용가능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가능성의 저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기업휴지손해
-

개인형 이동수단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 (용어의 정의)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단거리 이동에 사용되는 1 인용 저속 이동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을 말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부착장비를 포함한 총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며, 시속 25km 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에너지에 의한 동력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2. 다음 각 목의 비용
 - A. 제 4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
 - B. 제 4 조(손해방지의무)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된 제 3 자에 대한 구상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
 - C.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및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D.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공탁보증보험료(다만, 회사는 공탁보증의 제공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E. 제 5 조(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처리)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회사의 요구에 응하여 지출한 비용

제 3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반란, 사변, 테러행위, 폭동, 소요,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물질(핵물질에 오염된 물질 및 불확정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한 특성으로 인한 손해 및 방사능 오염 또는 방사선 조사로 인한 손해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 입은 신체장해(그 신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
7. 피보험자와 제 3 자 사이의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1. 먼지, 분진, 석면, 폐기물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 벌금, 과태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영업활동 또는 배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경기, 시범운전, 공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와 그 연습활동
산악자전거 운행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활동

제 4 조 (손해방지의무)

-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후송 기타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승인, 화해, 소송 또는 중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을 것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 2 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그 노력을 하였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 제 3 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회사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소송비용(중재·조정비용 포함), 변호사보수 및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액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처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해당 청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전면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른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자 미필적배상책임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은 피보험자의 수급업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야기한 불법행위로 인해 제 3 자의 신체손해 또는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하는 배상책임을 질 때, 피보험자에 부여된 일반적 감독의무상의 책임으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보험 특별약관

이 보험은 다음의 경우 주보험, 초과보험, 조건부보험 또는 기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다른 보험에 대하여 초과보험으로 적용됩니다.

- (1)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2) 손해가 다른 보험과 본 보험이 모두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 배상책임 담보특별약관

이 보험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 조건, 면책사항 및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수행하는 정비작업(시험운전, 수리를 위한 탁송 또는 인도를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다만,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 또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전쟁, 내란, 반란,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사유를 불문한 일체의 관리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수리를 위하여 수탁받은 자동차의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제 3 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손해 또는 배상책임.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제 6 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핵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

8. 먼지, 분진, 폐기물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9. 전자파 또는 전자기장(EMF)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 벌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1. 에너지(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재산에 대한 손해
 12. 오염물질의 비산, 배출, 스며듦, 방출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오염물질의 정화 또는 제거비용. 이는 누적적으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13. 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배상책임
 14. 일반적인 유지보수 또는 수리작업을 제외한 건물 또는 시설의 수리, 재건축, 건설 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상·하차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수리를 위하여 수탁받은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6. 피보험자가 판매, 증여 또는 폐기한 재물에 대한 손해 및 해당 재물 자체의 손해
17.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형재산의 사용불능에 대한 배상책임
 - a)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 b) 피보험자의 생산물 또는 수행한 작업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적합성 또는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음식물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
 - a) 피보험자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된 음식물 또는 재물
 - b)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 사업장 밖에서 사용되는 음식물 또는 재물
 - c) 전 각 목의 음식물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
19. 작업이 완료(인도 포함)되거나 포기된 이후 발생한 배상책임 및 해당 작업물 자체의 손해
20.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발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시술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1.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22. 지하매설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그 지하매설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재물에 발생한 재물손해
23. 오토바이의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4. 타이어 또는 튜브에만 발생한 손해 또는 부품, 부속품이나 기계장치의 절도 또는 강도로 인한 손해
25. 자연적 마모, 마손, 동결, 기계적 고장 또는 전기적 고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26. 자동차에 고정적으로 장착된 장비를 제외한 자동차 내 보관 재물의 손해
27.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가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8. 시험운전, 탁송 또는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부에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손해
29. 자동차의 통상적인 정비작업(부품의 수리 및 교체를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
30. 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은 사용인이 아닌 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1. 수리를 위하여 수탁받은 자동차의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사용손실 등을 포함합니다)
32. 「도로교통법」 제 43 조에서 정한 무면허운전 또는 같은 법 제 44 조에서 정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기타 모든 약관조항 및 조건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렌터카비용 보상 특별약관 II

보상하는 위험

「자동차정비업자배상책임보장특약」의 간접손해 면책조항 제 3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선택특약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정비업자배상책임보장특약」에 적용되며, 회사는 동 특약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 보상규정에 같음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직접손해

2.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란 피보험자의 자동차정비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 수탁자동차 : 자동차정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는 타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렌터카비용의 보상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조에 따라 발생한 렌터카비용 청구손해를 보상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렌터카비용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기준금액

A.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a) 렌터카의 차종은 운전자 없이 대여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고차량과 동급의 차량으로 정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고차량과 동일 차종의 렌터카 이용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 차종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차종의 차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b) 대체 가능한 렌터카 차종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휴차료 산정기준표의 범위 내에서 실제 렌터카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

A.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최대 ()일을 한도로 합니다.

B.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렌터카 대기기간: ()일

4. 피보험자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이익을 가지며, 손해 발생 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험증권 및/또는 대리운전기사 명부에 대리운전기사로 등록 또는 통지되지 않은 자의 운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자동차정비업자 배상책임보장 특약」의 면책조항에서 정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에 부속되는 관련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Ⅲ)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 담보위험의 추가, 일부 삭제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보험료는 다음 달 ()일까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료를 제 1 항에 따라 납부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변경사항이 보험계약에 추가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대리운전배상책임 특별약관

I. 보상하는 위험

1. 제 I 부 담보 A 의 면책조항 J-4 및 이 보험계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일반적인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운행을 종료하고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대리운전업체(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즉 오더회사)가 고객을 포함한 제 3 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보험 또는 「대리운전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다른 보험 또는 보상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II.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대리운전기사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2. 전쟁, 내란, 반란, 혁명, 파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지진, 화산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핵물질(핵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및 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방사능, 폭발, 방사선 조사, 방사능 오염 또는 이와 관련된 위험한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 피보험자와 제 3 자 간의 특별한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상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오염물질의 배출, 방류, 누출, 유출 또는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정화비용
 7.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관리·통제를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재물의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된 자동차의 손해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8.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측량사, 이·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시술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9. 지하매설물에 발생한 손해 또는 지하매설물의 손해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재물의 손해
 10. 먼지, 분진, 폐기물 또는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배상책임담보 등 법령상 의무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실제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음)
12. 자동차 또는 타이어, 튜브, 부속품, 기계장치,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 부품의 도난 또는 절도로 인한 손해
13. 자연마모, 부식, 동결,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장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
14.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15. 자동차의 수리작업(부품 교환 및 수리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6. 자동차 사용불능에 따른 손해를 포함한 모든 간접손해. 다만, 동급 차량의 대체 렌터카 비용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수탁자동차에 대해서는 렌터카 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7. 벌금, 과태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18. 대리운전기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19. 폭행, 협박, 사기, 절도 또는 강도 등 대리운전기사의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0. 타이어 또는 튜브에만 발생한 손해. 다만,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21. 회화, 골동품, 조각품 등 미술품과 차량 내 고객의 의류 또는 보행자의 소지품에 발생한 손해
22. 자동차를 인수한 장소에서 목적지까지의 통상적인 대리운전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손해
23. 대리운전기사(오더수행회사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손해
24. 차량 내 고객 또는 보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원인불명의 분실 또는 도난
25. 오더회사의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손해. 다만, 제휴회사 소속 기사가 입은 신체손해는 제외합니다.
26.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더회사 소속 기사가 야기한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휴회사 소속 기사가 야기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7. 사고 발생 시 오더수행회사가 오더회사와 제휴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모든 제휴회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회사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III. 자기부담금의 지정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지정된 경우 회사는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본 조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손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오더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경우

1) 대인 외 재물에 대한 제 3 자 재산손해배상책임

2) 고객 차량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고객 차량 자체 손해란 다음의 손해를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풍력에 의한 손해

(*1)"물체"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며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관에 직접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며, 엔진 또는 연료탱크 내부로 유입된 물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침수"란 흐르는 물, 고인 물, 범람수, 역류수 또는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문 또는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된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고객 차량 자체 손해 이외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제휴회사 소속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경우

1) 제 3 자 신체손해배상책임

2) 제 3 자 재산손해배상책임

3) 고객 차량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고객 차량 자체 손해란 다음의 손해를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물체와의 충돌·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물체의 낙하·비래 또는 풍력에 의한 손해

(*1)"물체"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며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관에 직접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며, 엔진 또는 연료탱크 내부로 유입된 물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침수"란 흐르는 물, 고인 물, 범람수, 역류수 또는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문 또는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된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 4) 고객 차량 자체 손해 이외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자기부담금이 지정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또는 「대리운전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취급업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2) 및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IV. 정의

1. "대리운전서비스"란 고객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영업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이를 접수한 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고객의 자동차를 인수하여 고객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위탁운전 및 발레파킹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란 도로에서 주행하도록 제작된 육상용 동력차를 말하며,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기타 이동장비는 제외합니다.
3. "대리운전서비스"의 보장범위에는 자동차 인수장소, 주차장소 및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반 도로구간이 포함됩니다.
4. "오더회사"란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하여 프로그램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5. "오더수행회사"란 요청을 배정받아 실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가 소속된 회사를 말합니다.
6. "제휴관계"란 프로그램회사를 통해 대리운전 요청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회사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7. "소속기사"란 오더회사에 소속되어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기사를 말합니다.
8. "제휴회사 기사"란 오더회사 소속은 아니나 프로그램회사를 통하여 호출을 배정받고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운전기사를 말합니다.

V.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보험계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대리운전 렌터카비용 보상 특별약관

1. 손해

1.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란 대리운전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탁자동차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2. 제 1 항의 수탁자동차라 함은 대리운전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위험

1. 「대리운전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6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에 기인한 렌터카비용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렌터카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기준금액

회사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렌터카를 임차한 경우 동일 차종의 국산자동차 렌터카 비용을 실비로 보상합니다. 다만, 차종별 1 일 렌터카비용 한도는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회사의 판단에 따라 동일 차종의 국산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희귀차종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 국산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의

동일 차종의 국산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피보험자동차와 유사한 연식, 배기량, 법정 승차정원 및 구조를 갖춘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종별 1 일 렌터카비용 한도는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 : CC / 원)

차종	소형 (1,600cc 이하)	중형 (1,600cc 초과 2,000cc 이하)	대형 (2,000cc 초과 2,800cc 이하)	대형 (2,800cc 초과)	승합차 (7인승 초과)
1일 한도액	76,000	112,000	216,000	349,000	137,000

(2) 인정기간

A. 수리가 가능한 경우

인정기간은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합니다. 다만, 최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부품 수급 또는 불합리한 수리 지연으로 연장된 기간은 인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B.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3) 대기기간: ()일

3.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로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대리운전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배상책임 특별약관」의 제 16 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에게 일부 책임만 있는 경우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대리운전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중품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경비업자 특별약관(Ⅰ)」(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화, 수표, 유가증권, 우표, 귀금속(금, 은 등을 포함합니다), 시계, 모피, 서류, 도면, 골동품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안장비 고장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무 특별약관(I)」(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1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적 사고로 인한 화재·폭발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경비업무 특별약관(I)」(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 10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금 추정액 가지급 특별약관 II

보험자와 재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에 있어 손해액의 산정만이 쟁점이 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토공사(Earthwork)완료 후 손해사정인이 조사·작성한 중간보고서에 기재된 미결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는 해당 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잠정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전 및 전압강하 부보 제외 특별약관

정전(Black-out) 또는 전압강하(Brown-out)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 및 증기 공급중단 부보 제외 특별약관

본 증권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염병·전염병 면책 특별약관

본 (재)보험계약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또는 인지된, 또는 이에 대한 우려로 인한 다음의 사유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또는 그 밖의 생물체(그 변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를 포함하는 유행병(Epidemic), 세계적 대유행(Pandemic), 감염성 질병(Infectious Disease) 또는 전염성 질병(Contagious Disease)

이는 해당 손실에 다른 원인 또는 사고가 동시에 또는 어떠한 순서로든 기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상기 유행병, 세계적 대유행, 감염성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을 통제, 감시, 예방, 억제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취하거나 취하지 아니한 조치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전염병 보장제외 조항 (LMA5399)

1. 이 보험계약의 다른 반대되는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염병 또는 그 전염병에 대한 우려 및 위협(실제로 발생했거나 그렇게 인식되었거나 관계없이)에 기 인하거나, 다른 원인들과 동시에 또는 연속으로 영향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거나 제기된 손해, 배상책임, 손상, 보상, 보상, 신체상해, 질병, 사망, 의료비, 방어 비용, 비용, 각종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전염병은 아래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매개체를 통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 2.1. 물질이나 매개체는 살아있거나 죽은 것으로 보이는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등의 유기체 또는 변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2.2. 전달되는 방법은 직간접적을 불문하고 공기를 통한, 체액으로 인한, 표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를 통한 전염을 포함합니다.
 - 2.3. 질병,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상해, 질병, 정신적 고통 또는 손상, 인간의 건강, 복지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합니다.

본 국문 번역문은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문 원본과 국문 번역문 간에 불일치, 차이 또는 해석상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 원본이 우선합니다. 영문 원본만이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도 영문 원본에 따라 해석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불이행 면책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Failure to Supply)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자력 위험 면책 특별약관 (AXA 양식)

회사는 원자력 또는 핵에너지, 방사선에 기인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 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a) 원자력 시설 또는 설비에서의 작업
 - b) 원자력 시설 또는 설비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품 또는 해당 시설·설비에 제공되는 용역
 - c) 원자력 시설 또는 설비의 운영
 - d) 방사성 물질의 취급, 보관, 운송 또는 폐기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쟁·내전·정치적 위험 및 테러 면책 특별약관

이 계약은 전쟁, 침략, 외국의 적대행위, 적대행위 또는 전쟁행위(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함), 내전, 반란, 폭동, 민중봉기, 군사봉기, 폭동 또는 소요가 반란에 이를 정도로 확대된 경우,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된 권력, 계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몰수·국유화·징발 또는 파괴, 테러행위 또는 이들 위험의 통제·예방·진압 또는 이와 관련하여 취한 일체의 조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테러"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단독 또는 집단으로 행동하는 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든 실제로 또는 위협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위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것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가 본 특별약관에 따라 특정 청구가 보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청구가 본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입증할 책임은 출재사에 있습니다.

본 특별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퀵서비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 1 조(담보위험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위험이란 보통약관 제 2 조(보상하는 손해)에 규정된 위험 중 피보험자가 퀵서비스 운송기간 동안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물에 생긴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송하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위탁된 물품의 시가를 한도로 송하인에게 부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구조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다만,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용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및 인건비
 3.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제 3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음 물품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어렵거나 특별한 위험에 노출된 물품으로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원고, 설계도면, 모형, 증서, 문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미술품, 골동품
2. 귀금속, 통화, 어음, 수표, 유가증권, 우표
3. 시계, 담배, 모피제품
4. 유리제품
5. 계란류
6. 살아있는 동물

제 4 조(면책사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 5 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또는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점진적 또는 우발적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일출(溢出)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자연발화, 산화, 곰팡이, 부패, 변색, 녹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대리인, 사용인, 가족 또는 친족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 또는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차량의 덮개(차량에 부착된 덮개를 포함합니다)의 불완전 또는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및 운송차량의 충돌사고가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 상호 간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 조에서 정한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도로교통법」 제 39 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손해의 원인이 과적 이외의 사유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 적재중량과 적재허용중량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13. 운송차량의 충돌사고가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장치의 고장 또는 전기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또는 폐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분실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기계류, 전자기기류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설치 또는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 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이사화물과 관련된 배상책임
-

※ 동 참고용 번역문은 영문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약관의 적용은 영문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19.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창고(기타 모든 보관시설을 포함합니다)에 보관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5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수탁화물이 인도될 날의 목적지에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송장에 기재된 본선인도가격을,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수입면장(수입면장이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③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소송비용,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 ④ 회사는 제 2 조(보상하는 손해) 제 2 항 제 1 호의 비용에 대하여 15 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 6 조(용어의 정의)

운송기간

"운송기간"이라 함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탁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전 운송기간을 말합니다.

유리제품

"유리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합니다.

- ① 유리, 도자기 또는 자기(磁器)로 제조된 제품
- ② 유리, 도자기 또는 자기로 제조된 용기 및 그 내용물
- ③ 유리, 도자기 또는 자기로 제조된 부품과 그 부품 원가가 전체 제품원가의 50%를 초과하는 완제품

도난 및 분실

"도난"이라 함은 제 3 자의 불법침입 사실이 입증되고, 피보험자의 신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가 도난신고의 접수를 확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